

문서번호	전략경영본부-9830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5.11.11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대표이사 방침 제37호

★주임	행정팀장	전략경영본부장	대표이사	
조아라	유준용	류명석	11/11 임성규	
협조				

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



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

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·사전적 정보공개 및 전면공개 시책에 따라 재단 정보공개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「정보공개심의회」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
-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정보공개내규 제11조
- 2015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
(대표이사방침 제115호, 2015.03.27)

II 심의회 주요 역할

- 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
 관련한 사항 결정
- 청구인 또는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이의신청
 사항 결정
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되는 안건의 처리
- 사전 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검토·확정

Ⅲ

심의회 구성

□ 재단 운영자문단 중 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 위촉

연번	구분	성명	소속	직위	비고
1	외부 위원	고일주	승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	교수	정보시스템
2		박경수	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	교수	사회복지
3		임아연	노무법인 나무	공인노무사	노무
4	내부 위원	류명석	서울시복지재단	전략기획본부장	위원장 (당연직)
5		유준용	서울시복지재단	행정지원팀장	부위원장 (당연직)
6		배진수	서울시복지재단	변호사	내부직원

※ 심의회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(당연직 제외)

심의회 구성요건

- 의무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
 - ▶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▶ 과반수 이상의 인원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로 구성
 - ▶ 위원장은 전략기획본부장, 부위원장은 행정지원팀장으로 위촉하며
심의회원은 위원장이 위촉함
 - ▶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1인으로 하며, 행정지원팀 정보공개 담당자로 함

IV 심의회 운영 내용

- 운영기간: 심의회 의원 임기기간
- 정기·비정기 심의회 개최 및 안건 심의

구분	주요 안건
정기 심의회	· 정보공개 업무 실태 점검 및 개선 사항 권고 등 연 2회 실시
비정기 심의회	·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/비공개 결정 ·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 심의 및 결정

-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 및 총괄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수행 부재 시 부위원장이 대행함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심의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참석회의로 진행하며,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실시

심의회 안건상정 절차



- 향후 추진계획: 2015년도 하반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- 2015년 재단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보고 및 논의
 - 2016년 재단 정보공개 업무 추진방향 논의

V

행정 사항

-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
- 감사실 및 사업추진 부서와의 협의 강화

- 붙임 1.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1부
2.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1부. 끝.